

광주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합588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 고 1.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국

변 론 종 결 2022. 8. 19.(피고 B, C) 2022. 9. 2.(피고 A)

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

1.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사이에 2020. 5.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에게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0. 5. 15. 접수 제152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A,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사이에 2020. 5.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은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에게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0. 5. 15. 접수

제152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별지 2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사이에 2020. 7.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에게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0. 7. 6. 접수

제205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고,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15. 11. 무렵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민물장어 양식 등 내수면어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신용보증서의 발급

가) 원고는 2017. 2. 23.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채무자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원고가 그 대출금 채무를 보증금액 720,000,000원(대출예정금액 800,000,000원의 보증비율 90% 상당), 신용보증기한 2018. 2. 22.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그 약정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전구상에 관한 조항이 있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단서 생략)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나) 원고는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봉선동지점장에게 보증금액 720,000,000원, 피보증인 채무자 회사, 보증기한 2018. 2. 22.까지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 등의 보증조건은 매년 변경되었는데, 최종적인 보증기한은 2020. 8. 21.이고, 보증금액은 648,000,000원이다.

3) 채무자 회사의 투자자 유치 및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가) 대규모 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던 채무자 회사는 2020. 2. 무렵부터 사업 다각화와 유통시스템 전환에 드는 자금 확보를 위해 신문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1구좌당 1,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10개월 후 출자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이었다.

나) 피고 A은 채무자 회사에 2020. 3. 4. 2,000만 원, 2020. 4. 17.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2020. 5. 15. 피고 A에게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C은 2020. 6. 19. 채무자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2020. 7. 6. 피고 C에게 별지 2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4) 보증사고 발생 및 보증채무의 이행

가) 채무자 회사는 중소기업은행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2020. 8. 21. 원금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2020. 11. 26. 중소기업은행에게 655,262,476원(= 원금 648,000,000원 + 이자 7,262,476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라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인정)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최종적 보증기한 2020. 8. 21., 보증금액 648,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된 사실, 채무자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원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2020. 8. 21.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11. 26.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655,262,476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사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채무 이행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2020. 8. 21. 자로 보증금액

648,000,000원에 관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또한 위 대출원리금의 대위 변제에 따라 2020. 11. 26. 자로 사후구상권도 취득하게 되었다(이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을 합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문제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20. 5. 15. 또는 2020. 7. 6. 각 체결된 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그 이후인 2020. 8. 21.(사전구상권) 또는 2020. 11. 26.(사후구상권) 각 발생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아직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2017. 2. 23. 체결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성립된 신용보증관계는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 시까지 갱신되어 존속하였던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시점(2020. 5. 15. 및 2020. 7. 6.)은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일(2020. 8. 21.)로부터 불과 1~3개월 전으로서 당시 이미 채무자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만인 2020. 8. 21.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2020. 11. 26.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정)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회사는 장차 발생한 채무까지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경우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다만 이 점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

(2) 그러나 앞선 인정 사실 및 제출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 회사가 피고 A, C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규모 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던 채무자 회사는 사업 다각화와 유통시스템 전환에 드는 자금 확보를

위해 신문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당시 채무자 회사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 피고 A, C은 실제로 채무자 회사에 각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투자약정 당시 예정된 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채무자 회사는 피고 A, C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피고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채무자 회사가 투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 이처럼 채무자 회사가 위 피고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한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로 인해 채무자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가 유발 또는 심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정해진 채권최고액(피고 A 48,000,000원, 피고 C 120,000,000원)은 피고들의 각 투자금액(피고 A 40,000,000원, 피고 C 100,000,000원)의 120%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거래관념상 합리적인 범위에 속한다.

○ 위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가 게재한 신문광고 등을 통해 채무자 회사를 알게 되었고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회사가 위 피고들과 통모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3) 소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A, C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론] 피고 A, C의 선의 수익자 항변에 관한 판단(= 인정)

설령 앞서 본 판단과 달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무자 회사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선의 수익자 항변은 이유 있다.

○ 위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가 게재한 신문광고 또는 채무자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통해 채무자 회사를 알게 되었고, 채무자 회사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안 등의 자료를 토대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들과 채무자 회사 사이에 이전에도 거래가 있었다거나 위 피고들이 채무자 회사의 운영자와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 채무자 회사는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광고하였다. 위 피고들은 투자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사이에 채무자 회사의 재정상태 악화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 회사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의 일환으로 투자 당시부터 예정된 대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 A은 채무자 회사에 2020. 3. 4. 2,000만 원, 2020. 4. 17.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투자한 뒤 채무자 회사로부터 2020. 4. 1.부터 2020. 6. 19.까지 4차례에 걸쳐 각 70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C은 앞서 본 2020. 6. 19. 자 1억 원 투자 전에도 2020. 3. 17. 자신과 딸 E 명의로 합계 2억 원을 채무자 회사에 투자한 뒤 2020. 4. 20.부터 2020. 6. 19.까지 3차례에 걸쳐 각 350만 원의 배당을 받았고, 2020. 6. 19. 자 1억 원 추가 투자 이후인 2020. 7. 20.부터 2020. 11. 20.까지는 5차례에 걸쳐 각 750만 원 내지 8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위 피고들이 채무자 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채무자 회사의 악화된 재정상태를 알고서 이를 우려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자 회사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2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F조합과 G조합을 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회사의 사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다. 채무자 회사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2.부터 다수의 가압류가 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부터 3~4개월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A, C은 그것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 C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판사 나상아, 판사 박건훈

별지 1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라고 합니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외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소외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와 통모하여 별지1목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약의 수익자입니다.

2. 원고의 소외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소외 H 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가. 소외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는 아래 중소기업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신용보증신청을 하였고, 소외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주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기한 내에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보증채무 중 미이행 채무액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소정 보증요율에 0.5%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③ 원

고가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였고, 소외 H 는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대표로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참조).

(단위: 원)

보증번호	보증금융기관	보증일	대출금액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대출목적	보증기간	보증금액		
I	중소기업은행 통신통지결제	2017-02-23	800,000,000	어업회사법인 인 D 유 한회사	소외 H
	중소기업저금대출	2018-02-22	720,000,000 (648,000,000)		
		2019-02-21			
		2020-02-21			
		2021-08-21			

나. 사전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소외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소외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는 2020. 8. 21. 원리금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상실로 신용보증사고(갑 제2호증 참조)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에 대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1호(제5조 주채무이행외무를 위반한 때에 의하여 2020. 8. 21. 사전구상권이 성립되었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2 참조).

다. 대위변제

원고는 소외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소외 H 를 대

위하여 2020. 11. 26. 중소기업에게 655,262,476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갑 제3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 2021. 1. 15. 20,946,628원, 2021. 1. 21. 35,000,000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여 대위변제금잔액은 599,315,848원입니다.

라. 미수위약금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보증번호 I 보 증금액 648,000,000원에 대한 미수위약금은 3,067,790원(요율 1.8, 대상기간 2020. 8. 22부터 2020. 11. 25.까지 96일)입니다.

마. 채권보전비용(대지급금)

원고는 구상금 회수를 위한 소외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채권집행보전비용으로 15,649,712원을 대지급하였습니다.

바. 손해금률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2019. 4. 1.부터 현재까지는 연 8%입니다(갑 제4호증 참조).

사. 소결

그렇다면 소외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소외 H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18,033,350원(대위변제금 599,315,848원 + 미수위

약금 3,067,790원 + 대지급금 15,649,712원) 그 중 금 599,315,84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사례행위에 대하여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의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소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2020. 8. 21. 원리금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상실로 신용보증사고(갑 제2호증 참조)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에 대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1호(제5조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에 의하여 2020. 8. 21. 소의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소외 H 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성립하였습니다.

나. 소의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부실기업으로 처리되면 원고가 소의 소의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자신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의 소의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가 2020. 8. 21. 원리금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상실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약 8개월 전인** 2020. 5. 15. 피고 A, 피고 B 과 사이에 별지1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나주동기소 2020. 5. 15. 접수 제

1527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갑 제5종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또한 2020. 5. 27. 피고 주식회사 J [] 과 별지1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0. 5. 28. 접수 제16592호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또한 2020. 7. 6. 피고 C [] 과 별지1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0. 7. 6. 접수 제20525호를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다. 그리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자인 소의 어업회사법인 D [] 유한회사는 원고의 구상금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무자력(채무 초과 상태)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이 소의 어업회사법인 D [] 유한회사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상 무자력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으며,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소의 어업회사법인 D [] 유한회사와 공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악의의 수익자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피고들과 소의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등 다수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이루어진 사해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

4. 결어

그렇다면 피고 A, 피고 B 과 소의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사이에 별지1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주식회사 J 과 소의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사이에 별지1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2020. 5.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C 과 소의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사이에 별지1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의 소의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행사를 해함을 알고 이루어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 피고 B 은 소의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에게 별지 1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0. 5. 15. 접수 제152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J 은 소의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에게 별지1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0. 5. 28. 접수 제165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 은 소의 어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에게 별지1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0. 7. 6. 접수 제205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별지 2

나주시 K 유지 2,116㎡

나주시 K, L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보이라실 249.80㎡

3. 나주시 M 유지 1,050㎡

4. 나주시 N 유지 795㎡

5. 나주시 O 유지 4,584㎡

6. 나주시 P 유지 2,589㎡

7. 나주시 Q 유지 5,313㎡

끝.

